

II.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역할과 특성

1. 보험사 지급불능과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의 목적은 위험으로부터의 보장(security)이다. 그런 까닭에 위험 보장이라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계약자가 판매자인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보험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에 대한 계약자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 때문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법규를 통해 누가 보험상품의 판매와 인수를 담당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여 보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⁸⁾.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보험계약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 배분의 변화다. 시장의 기능은 확대되는 반면,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축소되는 정부규제의 완화와 시장규율의 강화로 보험시장은 일부 보험사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경쟁 시장으로 변하였고, 실패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⁹⁾.

완전한 시장규율체제라면 상품을 구매한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구매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고, 시장은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행권의 Basel II나 보험권의 Solvency II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금융기관을 언제나 피해가는 소비자나 금융기관의 지급불능을 방치하는 감독당국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금융기관의 지급불능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보험사에 대해 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 회복을

8) Skipper 등(1997), p.4.

9) 정운찬(1999), p.8, pp.78-81. 참조.

목표로 경영정상화(rehabilitation) 조치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지만, 지급 불능에 대한 최후 수단은 인수합병 또는 계약의 전부 이전이나 보험허가의 취소 등을 통하여 보험사를 해산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사는 청산 또는 파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¹⁰⁾, 이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보호는 크게 청산절차 안에서의 보호와 청산절차 밖에서의 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¹⁾. 전자가 대다수 나라들의 보험권에서 채택되고 있는 보호 형태이지만¹²⁾, 보험계약자보호기금(policyholder protection funds)¹³⁾을 설치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은 청산절차 안에서 “우선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보험계약자에게 부여하는 우선변제제도를 두고 있다¹⁴⁾. 보험계약자의 신분이 파산법령에서 최우선 순위 채권자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조세당국, 사회보장당국, 파산신청자의 대열에 속하는지가 우선적 대우를 받고 있는가(preferential treatment)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할 때, 대다수 나라들에서는 책임준비금 또는 전체 자산에 한정하여 해당 지위나 차순위를 보험계약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¹⁵⁾, 일부 나라에서는

10) 보험사 구조조정과 청산절차에 대해서는 이성남 등(2003) 참조.

11) Yasui(2001), pp.303-304.

12)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들의 사례를 보면, (1) 보험사 스스로(터키 제외), (2) 감독당국(스위스 제외)이나 (3) 채권자가 청산을 요구하는 형태가 있는데, 대다수 나라들의 경우 최종 청산 결정은 감독당국에서 내리고 있다. (3)의 형태를 허용하는 나라들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이 있다. Leflaive(2001).

13) 보험권에서는 흔히 보험계약자보증기구(policyholder guarantee scheme)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 또는 보호기금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이런 기금에는 보험사가 다루는 모든 종목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금(general fund)이지만, 때로는 특정 종목만을 보장하는 특별기금(special fund)도 있다. 본문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금은 일반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14)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는 보험감독의 핵심원칙에서 보험사 청산 및 퇴출과 관련하여 “보험사 지급불능이나 청산에서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에 높은 우선권을 법에서 부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ICP No.16). IAIS(2003).

15)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특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채권자로서 최우선 순위를 부여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캐나다, 프

보험계약자를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다¹⁶⁾.

한편, 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형태(ex-ante funding or pre-funding type)와 보험사의 사후적 지급능력에 의존하는 형태(ex-post funding or post-funding type)가 있다. 어느 경우든 이들 기금들은 보험계약자에게 적절하거나 여유 있는 보상한도를 설정하여 보험계약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면서도 얼마간의 손실을 기금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의 운영 주체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기도 하지만, 보험산업에서 직접 운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도 있다¹⁷⁾.

그런데 보호기금은 일반적으로 시장 원리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험상품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구매자에게 지우는(let the buyer beware) 대신 기금이 보험금 지급을 보장할 경우 구매자에게는 보험사를 모니터링하고 선별하려는 동기가 약해지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나타난다. 또한 재무건전성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기금은 부실한 보험사는 기금에 남으려 하고 건전한 보험사는 탈퇴하려는 유인이 커지는 일종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역선택(anti-selection)에 직면하게 되고,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도 커질 수 있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할 능력이 없으므로 감독당국의 규제는 물론 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계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제 기금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해 볼 필요가 있다. 보호기금이 보험권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이유를 보호기금의 일반적인 존립 근거와 순기능 및 역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보험시장에 투영해보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터키, 멕시코, 미국, 한국 등은 최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Leflaive(2001).

16) 영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 Leflaive(2001).

17) Skipper(1997), pp.38-39. 참조.

2. 보호기금의 필요성과 역기능 보완

가. 보호기금의 필요성¹⁸⁾

보호기금이 개인을 포함한 비전문적인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금 존립의 첫 번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험사에게 신용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채권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보험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지 않은 소비자에게 일반 기업보다도 복잡하고 전문적인 보험사 평가와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어떤 산업보다도 커서 규제와 감독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니즈도 큰 분야이다. 그런데 강력한 규제와 감독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파산하게 될 경우 비전문적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또 다른 논거는 어느 한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들은 재무적 손실을 겪게 될 것이고, 이 때 보험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보험소비자들로서는 다른 보험사들에 대한 재무건전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보험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해지쇄도(insurance run)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근거이며, 금융권 보호기금을 정당화시켜주는 가장 보편적인 논거이다.

그러나 두 번째 논거는 은행권 보호기금의 필요성에는 적절할지 몰라도 보험권 보호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로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Skipper 등(1997)은 기금의 정당성이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즉 지급불능사태가 인출쇄도(bank run) 등에 의하여 산업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보험권보다는 은행권에서 크

18) 본문의 내용은 Yasui(2001)와 Moysey(1998)의 기금의 설치 필요성과 장·단점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게 부각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¹⁹⁾. 이에 대하여 Yasui(2001)는 보험계약자와 예금자, 보험사와 은행의 차이를 들어 구체적으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²⁰⁾. 예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예금자는 애초에 약속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거나 미래 이자를 포기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기는 하지만, 은행이 파산할 경우 재빨리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렇듯 은행의 파산은 파급효과가 커서 즉각적으로 정부의 위기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험상품의 중도해지는 금전적 손실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를 전가하지 못하는 손실이 따른다. 이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예금자처럼 보험사로 쉽게 달려가지 못하며, 보험사로서도 유동성 확보에서 은행보다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해지쇄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보험사의 파산은 일단 보험계약자가 보유 리스크를 보험사로 전가하는 구조의 불안정을 초래해 사회 전반의 리스크관리가 흔들리는 상태가 되며, 이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긴 터널을 거쳐서 결국 정부의 위기로 이어지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²¹⁾. 이러한 반론은 보호기금 존립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지급불능의 파급효과(contagion effect)에 있어서 보험권과 은행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²²⁾ 예금자보호기금과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서

19) Skipper 등(1997), p.39. 이와 관련 ‘예금에 대한 보험(deposit insurance)’과 ‘보험에 대한 보증(insurance guaranty)’이라는 표현으로 차이가 언급되기도 한다. 즉 예금자보호기금은 예금자의 인출쇄도 유인을 감소시키고 지급결제시스템을 보호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줄이려고 보험 원리를 도입한 것이지만, 보험은 시스템리스크보다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우선하고 있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김형원 등(2005), pp.24-30. 참조.

20) Yasui(2001), p.307.

21) 현대 경제는 각종 질병, 사고 등에 대한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기능 중 많은 부분을 정부와 민간부문(민영보험)이 분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사 파산이 곧바로 정부의 위기를 불러오지는 않지만, 점차 사회보장 체계의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정부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터널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22) 이는 나중에 논의할 적립기금의 규모와 관련한 논의에서도 은행과 보험 간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논거가 된다.

도 뚜렷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예금자보호기금은 설치하고 있어도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나, 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대다수 나라들에서도 은행권과 보험권의 기금이 전혀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위의 반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례들이다²³⁾.

세 번째 근거는 보호기금이 부실 보험사에게 자연스런 퇴출장치를 마련해 준다는 데 있다. 신속한 처리로 부실 보험사가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의 역동성을 지원하는 보호기금의 존재는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앞의 논거들보다 설득력이 있다. 보호기금은 경쟁시장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인 부실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함으로써 보험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것을 돕는다. 보험사가 퇴출될 때, 보험계약자들은 퇴출 보험사에게 전가하였던 리스크에 또 다시 노출될 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또 다른 보험사에게 전가하지 못할 수도 있고 기존과 동일한 보험상품을 보다 비싼 값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보호기금은 퇴출 보험사와의 기존 계약을 지속시켜주거나 현금금(cash value) 지급으로 보험계약자들의 어려움을 상당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다.

더구나 기금이 없거나 빈약할 경우, 감독당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험사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규제유예(regulatory forbearance) 경향이 있다는 것은 보호기금의 필요성, 특히 적정 수준의 기금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²⁴⁾. 대형 보험사의 경우 피해 보험계약자의 수도 매우 많고 그 사회적 파급효과도 크다. 이에 따른 감독당국의 규제유예 현상은

23) OECD의 경우 2001년 현재 30개 회원국 중 9개국만이 보험권에서 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한국과 영국만이 여러 금융권의 기금들을 통합운용하고 있을 뿐이다. OECD(2001), Garcia(2000). 자세한 내용은 제II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4) 전홍택·안영석(2001), pp.5-6. 그러나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 처리에는 어차피 보호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후적 처리로 족하다는 기금 무용론이 주장되기도 한다. 송홍선(2004).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표현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IMF 구제금융기를 전후로 국내에서도 이미 경험한 바 있으며, 미국 등 해외에서도 그 사례가 드물지 않다²⁵⁾. 감독당국의 조치가 계약자 보호보다 부실 보험사 회생에 힘을 쏟게 되면 오히려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기금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영역 간 겸업화(financial convergence) 추세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은행과 보험이 상호 통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교차판매 등이 증가할 경우 영역 간 공정경쟁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가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도 보호기금을 갖춘 금융권의 금융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기금의 안전망에서 보호받을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미래 금융시장의 전개를 고려할 때 상호 접점이 많은 금융권 간에, 특히 생명보험과 은행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논거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권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의 논거들, 즉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 보호, 지급불능 위기의 확산 차단, 부실 금융기관 퇴출 지원과 경쟁시장 유지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서도 그 존재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논거들로 열거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논거들이 금융권마다 가지는 중요성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지급불능 위기의 확산을 차단한다는 논거는 보험권에서는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기금 설치의 정당성 또는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일단 보험권에 기금이 설치된 후의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기금의 결함을 보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느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보호기금의 존재로 인한 역기능을 살펴봄으로써 현실적으로는 보호기금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보완이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를 짚

25) ‘대마불사’는 미국 금융감독에서도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이었다. 실제로 1984년 컨티넨탈일리노이은행이 영업을 지속하면서(open bank assistance) 자금을 지원받은 사례와 1998년의 롱텀캐피탈(LTCM)에 대한 구제금융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송홍선(2004). 보험권 사례들은 Leflaive(2001), EC(2002) 참조.

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의 각종 시장규율 강화 조치들을 이해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나. 기금의 역기능과 보완수단

모든 보험제도에는 정보를 소유한 사람과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대리인 문제 등의 역기능이 발생하는 데, 이러한 문제는 예금보험기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기금이라는 금융안전망이 도입되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모두, 심지어는 감독당국에게서도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한다(<표 11-1>참조). 보호기금이 설치되면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가 지니고 있는 리스크와 상관없이 가장 값싼 보험상품을 찾는 경향을 보인다. 보험사 역시 기금가입 이전보다 리스크 인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자산운용에서도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⁶⁾.

그러나 도덕적 해이는 보험권은 물론 은행권에 내재된 특성이기도 하거니와, 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실해진 보험사와 해당 보험계약자가 감독당국에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기금의 존재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금 설치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가, 어떻게 유인부합적인(incentive compatible)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²⁷⁾. 이에 따라 완전보장 대신 보험계약자와 기금이 손실을 분담하는 부분보장, 보험사의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적기시정조치, 보험료차등제 등 기금의 역기능을 줄이려는 여러 장치들이 예금보험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26) 전홍택, 안영석(2001).

27) Yasui(2001), p.6.

< 표 II-1 > 보호기금의 역기능과 해소방안

역기능	내용	보완책
도덕적 해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기관 선정 태만 2. 기금 투명성 부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시적 보호기금제 2. 부분보장제도 3. 보장 범위와 한도 명시 4. 적기시정조치 5. 신속한 부실 처리
역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적인 기금 가입 2. 일률적 보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가입 의무화 2. 보험료 차등화
대리인 문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치적, 감독상 포로 (political, regulatory capture) 2. 기금부족 따른 정리지연 3. 감독기관과의 이해상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의 독립성과 신뢰성 확보 2. 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 배제 3. 감독기관과의 협력 4. 적정 수준의 기금 확보

자료: 전홍택·안영석(2001), p.6.

한편, 보호기금의 재원은 기금에 가입한 보험사들로부터 각출금(예금보험료)으로 조달되므로 기금의 존재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이처럼 보호기금의 존재는 보험료 덤핑과 준비금 적립 소홀 등으로 실패한 보험사가 초래한 손실을 건전한 보험사들이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부실한 보험사들의 불공정한 시장경쟁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더구나 보호기금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는 보험사의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켜 재무건전성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금의 가입이 보험사의 선택에 달려있다면, 건전한 보험사는 기금에서 탈퇴해 버리고 부실한 보험사만 기금에 남게 되는 이른바 역선택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법령으로 보험사들의 기금가입을 강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재무건전성에 따른 보험료차등제를 도입하여 역선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례는 드물다. 이 때문에 기금과 관련하여 보험사들의 재무 부담은 가장 큰 이슈의 하나이며, 세계 보험권의 경우 적립할 금액을 미리 정해놓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거나 사전

적립부담이 미미한 사후각출기금을 선택하고 있다.

때때로 보호기금 여부에 따른 불공정 경쟁은 서로 다른 나라를 본국으로 하는 국내외 보험사들 간의 불공정 경쟁 논의로 확대되기도 한다. 즉, 안전망을 지원하는 나라의 보험사는 안전망이 없는 나라의 보험사에 비하여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역외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한 논거로 보인다. 그러나 안전망이 있음으로써 보험소비자를 유인하는데 더욱 유리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므로 그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와 대비하여 보호기금에서는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호기금이 정치권이나 규제감독당국에게 종속(political or regulatory capture)되어 부실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부실 규모가 더욱 커지는 일이 일반적이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은 은행 중심의 시장구조에서 오는 폐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현행 통합기금은 보험계약자의 이익보다는 예금자의 이해관계에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기금이 정치와 감독은 물론 은행권의 포로(banking capture)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금의 독자성 또는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의 지배구조, 시장 감시 및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감독기능과의 협조 등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금 설치에 따른 역기능의 보완은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 통합기금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즉 실질적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급된 필요성 내지 순기능과 역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보호기금은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 이 점에서, 유럽연합(EU)이 2005년 1월에 보험계약자보호기금과 관련하여 역내 회원

국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일련의 원칙들은²⁸⁾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EU가 제시한 원칙은 최소한의 공통 기준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25개 국가들로 이루어진 경제연합체라는 EU의 특성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III장에서는 구체적인 EU의 원칙은 무엇이며, 그러한 원칙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국제적 추세를 파악하고자 한다.

28) EU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 대한 일련의 원칙을 담은 초안을 회원국들에게 제시하고, 2004년 11월까지 8개 회원국과 유럽보험사연합(CEA) 및 독일보험협회(GDV)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2005년 1월 초안을 제시하였다. EC(2004, 2005) 참조. 한편, EU는 은행권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지침(94/19/EC)과 투자자보호기금에 대한 지침(97/9/EC)을 제시한 바 있다. EC(2002).